

##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(안)

의안 번호	14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6. 10.16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사유

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06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 
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 
 지역보건의료계획(2006~2010년)를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 2. 주요골자

#### 가.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

- 지역주민의 요구도 및 사회관심도, 각종 기초 통계자료 수집분석실시
- 지역사회 진단 결과
  - ▷ 인구 지속 감소 추세 및 저출산 고령화 양상  
 ⇒ 모성, 영.유아, 노인보건사업 비중 증대
  - ▷ 의료취약계층 대상 ⇒ 만성질환관리, 전염병관리, 재활보건사업 확대
  - ▷ 민간의료기관과 역할분담 ⇒ 보건소는 건강증진 등 예방중심으로 전환
- 중점과제 선정결과
  - ▷ 2004년 부산시민설문조사결과 및 지역현황분석결과 등 반영
  - ▷ 고혈압관리사업, 운동실천사업, 암검진사업 선정

#### 나. 중점과제 수립 (3가지 사업)

#### 다. 건강증진사업 계획(금연, 절주, 운동, 영양)

#### 라. 구강보건사업 계획

## 마. 개별사업계획(13가지 사업)

- 영.유아 보건사업
- 모성보건사업
- 대도시방문보건사업
- 재활사업
- 노인보건사업
- 정신보건사업
- 전염병예방 및 관리사업
- 의.약무관리사업
- 응급의료에 관한사업
- 진료,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
- 보건 및 검사에 관한 사업
- 공중보건의사 지도 사업
- 기타 취약계층 지원사업(저소득여성 건강검진, 희귀난치의료비지원, 암관리)

## 바.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

- 조직 및 인력
- 시설, 장비, 예산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, 동법시행령 제5조
- 나. 주민공고 : 2006. 9. 27 ~ 10. 11(15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- 다. 기타 : 2006. 10. 13 ▷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심의